

## < 정 오 표 (1) >

**1. 정정대상 투자신탁**

- 유리트리플알파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2. 효력발생예정일(변경시행일) : 2015.09.14**

**3. 주요 정정사항 :**

- C-P1 클래스 신설
-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추가 등)
- 채권평가회사 추가(에프앤자산평가)

**[규약]**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3조(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	<p>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6. (생략)</p> <p>&lt;신설&gt;</p>	<p>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6. (현행과 동일)</p> <p><u>7. Class C-P1 수익증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전용 수익증권</u></p>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p>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1~6. (생략)</p> <p>&lt;신설&gt;</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1~6. (현행과 동일)</p> <p><u>7. Class C-P1 수익증권</u></p>
제39조(보수)	<p>③ 제1항에 따른 당해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6. (생략)</p> <p>&lt;신설&gt;</p>	<p>③ 제1항에 따른 당해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6. (현행과 동일)</p> <p><u>7. Class C-P1 수익증권</u></p> <p><u>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6.00</u></p> <p><u>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5.50</u></p> <p><u>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25</u></p> <p><u>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5</u></p>

[일괄신고서/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2부.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종류형 구조 <신설>	나. 종류형 구조 <C-P1클래스> · 가입자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전용 수익증권 ·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보수: 운용(0.6), 판매(0.55), 신탁(0.025), 사무관리(0.015)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신설>	(4) 퇴직연금제도의 세제(Class C-P1 가입자에 한함) 추가 -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 <a href="http://pension.fss.or.kr">http://pension.fss.or.kr</a> )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최근 결산일(반기) 및 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라. 운용자산규모 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제4부.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신설>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u>에프앤자산평가주</u>
제5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신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u>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u>

**[간이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1부. 5. 투자운용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u>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u>
제1부. 6.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사전기준))	-	<u>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u>
제2부. 1. 보수 및 수수료	<신설>	<C-P1클래스> · <u>가입자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전용 수익증권</u> · <u>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u> · <u>보수: 운용(0.6), 판매(0.55), 신탁(0.025), 사무관리(0.015)</u>
제2부. 2. 과세	<신설>	(2) <u>퇴직연금제도의 세제(Class C-P1 가입자에 한함) 추가</u> - <u>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u> ① <u>연금계좌 세액공제</u> <u>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u> ② <u>과세이연</u> <u>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u> ③ <u>퇴직연금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u> <u>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u>

		<p>수령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p> <p>※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 (<a href="http://pension.fss.or.kr">http://pension.fss.or.kr</a>)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제3부. 요약재무정보	-	최근 결산일(반기) 기준으로 업데이트